

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(이하 "당사국"이라 함)는,

카나다와 대한민국간 경제 및 무역관계의 실질적인 성장을 인식하고,

카나다와 대한민국이 공히 달성하고자 하는 더욱 활발한 관계증진을 위하여 무역 및 경제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유념하여,

양국간 무역관계를 강화,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6년 12월 20일에
발효된 카나다와 대한민국간의 무역협정을 상기하고,

각 당사국 국민과 발명특허, 실용신안, 산업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
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9년 2월 13일 발효된 산업재산에 대한
각서교환을 상기하며,

산업, 과학, 기술, 에너지 및 자연자원과 같은 분야에서 경제협력
증진으로 얻게될 공동이익과 호혜를 인식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

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무역, 산업,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
협력활동을 장려,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
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제 2 조

(1) 이 양해각서의 협력활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경제협력에 관한 토론 및 정보교환 그리고 협력의 기초위에서
유용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는 사업 및 계획의 발굴을 위한
전문가 회합과 같은 각종 형태의 회합